

## 인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개선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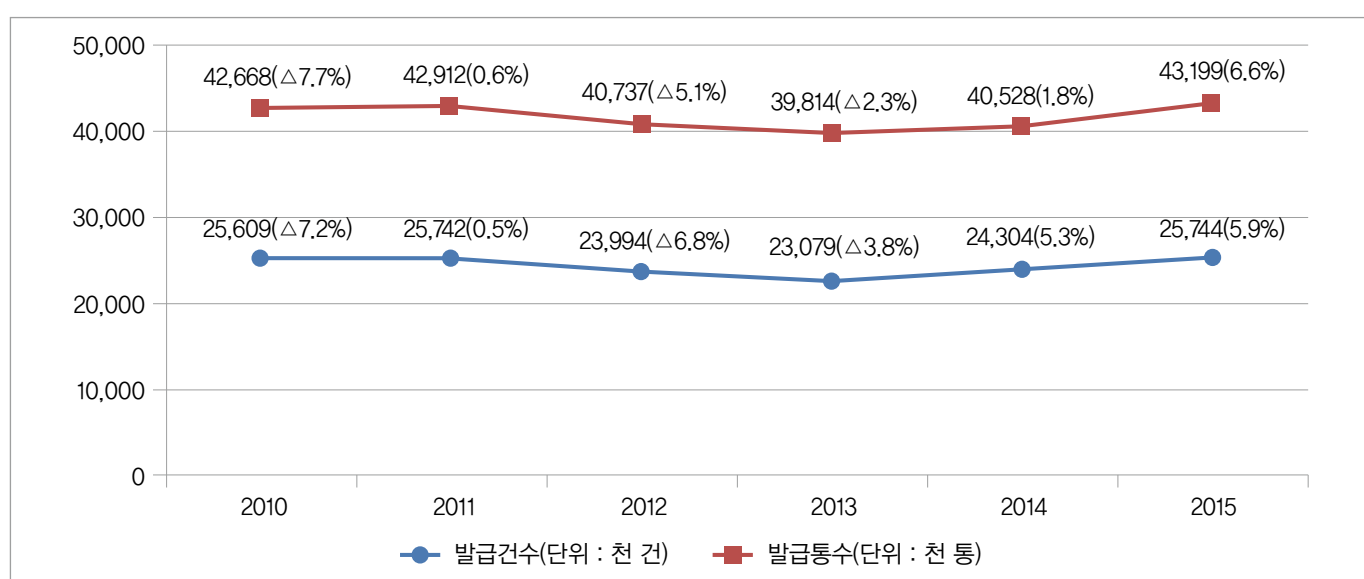
## 인감제도의 개념과 유용성

- 인감이란 개인의 도장을 행정청(시·군·구)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공무원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하는 것
- 인감증명은 지역사회가 협소하고 인구의 유동화가 적어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시대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근래에 그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인감제도의 쟁점 : 본인 및 본인거래의사확인 기능

-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인감증명사무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통수는 증가
  - 역대 정부마다 인감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민들 사이에 이미 굳어진 관행과 인감에 대한 과도한 오신이 존재
  - \* 2010년에는 인감사무 감축효과, 2012년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급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인감증명 발급 현황〉



출처: 김건위·최인수(2016: 57); 행정자치부(2016)

## ○ 인감제도의 기능에 대한 판례

- 대법원 판례요지는 인감증명의 기능에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 확인 기능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등)

## 〈2006년 이후 대법원 판례〉

“간접증명방식(인장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주는 직접증명방식에서 복사본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자체에서 본인의사 확인 기능에 대해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음”

## ○ 폐지나 존치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여전히 존재

- 인감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었던 2009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찬성측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유지비용도 많이 소요됨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측은 인감제만큼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안전한 장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 외국 사례 : 서명제도와 공증제도의 병행

## ○ 대부분 외국에서는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주로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병행하여 본인의사 확인 기능으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유일하게 인감을 사용하는 국가인 일본과 대만은 인감도장 위조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로 인해 인감증명 사무를 감축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는 방향을 모색 중임

〈인감유사제도 해외사례 비교〉

국가명	본인의사 확인 방법				비고
	인감제도	서명제도	공증제도	기타	
일본	○	-	○	-	· 일부 시 인감폐지 시도했으나 반발로 무산 ·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기 등 공증 가능
대만	○	-	○	-	· 인감도장 위조해 타인 도용 사건 발생 · 인감증명 폐지 및 대체 방안 검토 중
독일	-	○	○	-	· 서명제도 도입으로 공증권한 약화
이탈리아	-	○	○	○	· 본인확인, 서명인증, 사진인증, 사본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및 공인제도 활용

\* 행정자치부가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6.4월 기준)로서 실제 국가의 제도운영 관련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전방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병행

##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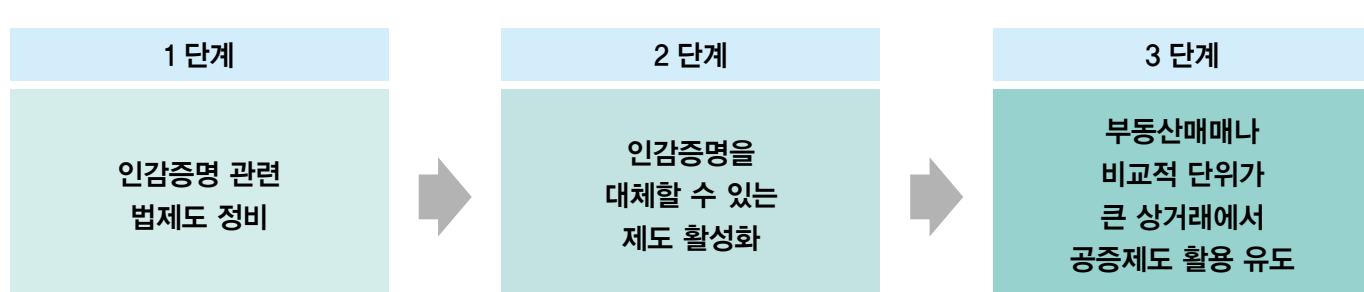
-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로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나 공증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서울고법 판결문 발췌〉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로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안전함”(서울고법 2014. 4.18. 선고, 2013나2011391).

- 인감증명서는 거래당사자의 동일성 등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의 기명날인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증거보다 거래당사자의 거래의사, 문서의 성립과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더 강한 추정력을 지님

## ○ 오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인감증명 대체 수단 시행



## ○ 지속적인 인감 수요 감축 추진 및 공무원 이해 제고

- 현행 법령이나 관행에 의한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한 과감한 추가적인 정비
- 국민 및 인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시행

▶ 내용문의 :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02-3488-7339, cigma@krila.re.kr)

▶ 본문보기 : 김건위·최인수(2016), 「인감증명의 기능 및 활용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문보기

▶ 지난호 보기 : 지방규제개혁, '간주규정' 도입 등 소극적 형태 개선(박해욱 연구위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mailto: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